

##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 우주법의 점진적인 발전을 중심으로 -

정영진\*

### 목 차

- I. 서 론
- II. 우주의 군사적 이용의 형태
- III. 국제법상 우주의 군사적 이용 가능 여부
- IV. 결 론

---

\* 법학박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래전략본부 선임연구원

## I. 서론

최근 우주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표어는 ‘우주활동의 안전(safety)·안보(security)·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sup>1)</sup> 이 슬로건의 등장 배경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아래의 두 가지 상황에 기초한다. 첫째, 2000년대 들어 우주활동의 주체 및 인공위성의 증가로 우주의 과밀화가 심화되자,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인도, 일본 등 우주 선진국을 중심으로 우주가 경쟁의 각축장으로 떠오르면서 우주 그 자체가 분쟁 지역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둘째, 인공위성, 우주발사체 등 우주물체의 발사는 필연적으로 우주쓰레기<sup>2)</sup>의 기하급수적인 발생을 초래하여 우주쓰레기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상기 현상은 우주활동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의 동인과는 달리 우주활동 안보의 동기를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위험 또는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상태”<sup>3)</sup>로 정의되는 안보를 군사 활동과 전혀 무관하게 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보 개념을 우주활동에 적용할 경우, 우주활동의 안보를 우주에 대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우주에 기반을 둔 위협으로부터의 자유”<sup>4)</sup>로 정의할 수 있다. 우주에 기반을 둔 위협이란 다른 인공위성 또는 우주쓰레기와의 충돌 등과 같은 소극적 위협뿐만 아니라 전자파 장애, 우주 및 지상에서 무기 경쟁, 더 나아가 군사적 공격 등과 같은 적극적 위협이 있을 수 있다.<sup>5)</sup> 바꾸어 말하면, 우주에 기반을 둔 적극적 위협은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말한다. (II) 그렇다면 실제로 우주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된 사례가 있는가? (III) 만일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이를 규제하는 국제법은 무엇인가?

1) 정영진, ‘유럽연합의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의 내용 및 전망’, 국제법학회논총, 제59권 제3호, pp. 217-240

2)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UN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와 우주청 간 우주쓰레기 조정위원회(Inter-Agency Space Debris Coordination Committee)가 각각 채택한 우주쓰레기 경감 가이드라인(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은 우주쓰레기(space debris)를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정의한다: “파편과 파편의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지구궤도에 있거나 또는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능하지 않는 사람이 만든 모든 물체(all man made objects including fragments and elements thereof, in Earth orbit or re-entering the atmosphere, that are non functional)”.

3) Black’s Law Dictionary, 8<sup>th</sup> Edition 2004, WEST Thomson Business, p.1384

4) Secure World Foundation, *Space Security 2011*, Ontario, Pandora Press, 2010, p.7.

5) Laura Grego and David Wright, *Securing the Skies: Ten Steps the U.S. Should Take to Improve the Security and Sustainability of Space*, Cambridge,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2010, p.2.

## II . 우주의 군사적 이용의 형태

우주의 군사적 이용은 (1) 우주의 군사화(space militarization)와 (2) 우주의 무기화(space weaponisation)로 규정된다. 전자는 국가의 군사체계에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것이며, 후자는 우주에 실용무기체계 그 자체를 도입하는 것을 가리킨다.

### 1. 우주의 군사화

2014년 7월 기준으로 지구궤도에서 활동 중인 인공위성은 총 1,235기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41.5%를 차지하는 512기가 미국의 인공위성이며, 512기 중 159기가 군사위성이다.<sup>6)</sup>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의 군사위성과 군사 목적의 탑재체를 실은 통신, 지구관측 및 과학 목적의 민간위성을 포함하면, 군사 활동에 이용되는 인공위성의 수는 상당할 것이다. 우주의 군사화는 지상에서의 군사 작전에 인공위성을 수동적 및 비침략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인공위성은 평시의 첩보활동뿐만 아니라 1992년 걸프전을 계기로 전시에 꾸준히 활용되고 있다. 걸프전의 종전을 가져왔던 사막의 폭풍 작전 당시 다목적군은 모든 차량과 일부 전투원에 전 지구 위치추정 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을 장착하였다. 특히, 전 지구 위치추정 시스템을 장착한 미사일이나 폭탄은 기상 여건에 상관없이 정지하거나 이동 중인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다. 이는 1999년 코소보전과 2001년 아프가니스탄전에서 실제로 사용되었으며, 미 해병대는 2013년 전 지구 위치추정 시스템을 장착한 이중모드 레이저유도탄(Dual Mode Laser Guided Bomb)의 실험에 성공하였다.<sup>7)</sup>

6) [http://www.ucsusa.org/nuclear\\_weapons\\_and\\_global\\_security/solutions/space-weapons/ucs-satellite-database.html](http://www.ucsusa.org/nuclear_weapons_and_global_security/solutions/space-weapons/ucs-satellite-database.html) (2015.2.10)

7) <http://au.ibtimes.com/lockheed-martins-paveway-ii-dual-mode-laser-guided-bomb-tested-us-navy-1316592>

## 2. 우주의 무기화

우주의 무기화를 구성하는 우주무기(space weapon)는 무기의 발포 지점과 표적이 위치한 공간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우주 지향성(earth-to-space) 우주무기, 우주 간(space-to-space) 무기.

### (1) 우주 지향성(earth-to-space) 우주무기

우주 지향성 우주무기에는 전 지구 위치측정 시스템의 신호를 방해하여 적국의 군사작전을 방해하거나 인공위성 요격미사일(Anti-Satellite Missile) 또는 외기권 파괴 미사일(Exoatmospheric Kill Vehicles)을 발사하여 적국의 인공위성을 직접 요격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미국은 1980년대 말부터 인공위성 요격미사일이나 외기권 파괴 미사일의 개발에 착수하여 이지스함과 지상 기반 외기권 방어시스템(Ground-Based Midcourse Defense)에 배치해 오고 있다. 2008년 2월 미국이 이지스함에서 SM-3를 발사하여 자국의 정찰위성 USA-193을 격추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러시아는 표적 인공위성의 주변 궤도에 재래식 폭발물의 발사를 목적으로 공공전궤도 인공위성 요격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인공위성 요격미사일에 의하여 발사된 폭발물은 표적 인공위성에 돌진하여 폭발하게 된다. 아울러, 러시아는 사거리 350km의 외기권 파괴 미사일을 개발하였다. 중국도 2007년 1월 자국의 기상위성인 FY-1C를 요격함으로써 인공위성 요격미사일을 실험하였다. 2014년 7월 중국은 자국 영토에서 지상기반 미사일 방어(land-based anti-missile)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sup>8)</sup> 미국은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이 실험을 인공위성 요격미사일 실험으로 간주하였다<sup>9)</sup>.

### (2) 우주 간(space-to-space) 우주무기

우주 간 우주무기에는 표적에 대한 인공위성의 직격타격과 같은 운동에너지 무기(Kinetic Energy Weapons)와 인공위성에 광선 및 레이저 무기를 탑재하는

8) [http://eng.mod.gov.cn/DefenseNews/2014-07/23/content\\_4524056.htm](http://eng.mod.gov.cn/DefenseNews/2014-07/23/content_4524056.htm)(2015.2.4)

9) [http://www.un.org/disarmament/special/meetings/firstcommittee/69/pdfs/TD\\_OS\\_27\\_Oct\\_USA.pdf](http://www.un.org/disarmament/special/meetings/firstcommittee/69/pdfs/TD_OS_27_Oct_USA.pdf) (2015.2.4)

지향성 무기(Directed Defense Weapons)가 해당된다. 구소련이 1987년 5월 발사한 우주선 Polyus에 탄산가스레이저(Carbon dioxide laser)를 탑재한 것이 지향성 무기의 대표적인 실례이다.<sup>10)</sup> 최근에는 일종의 운동에너지 무기로서 우주기뢰(space mines)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하다. 우주기뢰란 재래식 폭발물을 실은 인공위성이 표적에 근접하여 폭발하거나 표적에 직접 충돌하여 표적을 파괴하는 무기를 일컫는다.<sup>11)</sup> 우주기뢰는 개발과 발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수명이 긴 소형위성<sup>12)</sup>을 이용하는데, 특히 교육용으로 발사되는 피코위성이나 나노위성은 폭발 전에는 위성의 목적을 파악하거나 위치를 탐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미국 공군은 표적에 대한 근접 촬영, 기동성, 도킹 등을 시험하기 위하여 2005년 소형위성인 XSS-11을 발사하여 랑데부에 성공하였다. 또한 미국의 국방고등연구기획청 그리고 공군과 해군은 공동으로 지구정지궤도에서 소형위성의 국방 목적의 활용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하여 2006년 지구정지궤도에 소형위성인 MiTEx 2기를 발사하였으며, 펜타곤은 2009년 1월 MiTEx가 지구정지궤도에서 떠도는 기능을 상실한 인공위성에 매우 근접하여 작동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다.<sup>13)</sup>

### Ⅲ. 국제법상 우주의 군사적 이용 가능 여부

우주활동의 대헌장(*Magna Carta*)인 1967년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하여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서 국가의 활동을 규제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은 우주활동

10) 정영진, 전계 논문, p. 235.

11) Secure World Foundation, *Space Security 2014*, Ontario, Pandora Press, 2014, p.77.

12) Tony Azzarelli,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Nano/Pico Satellites, ITU Seminar, 14-16 April 2014, Cyprus.

	Femto Satellite (펨토위성)	Pico Satellite (피코위성)	Nano Satellite (나노위성)	Micro Satellite (소형위성)
무게(kg)	< 100g	0.1 - 1	1 - 10	10 - 100
궤도(km)	200 - 400	200 - 400	300 - 800	500 - 2000
수명(년)	1	1 - 2	2 - 3	2 - 5
비용(백만\$)	< 0.05	0.05 - 2	0.1 - 10	1 - 30

13) Secure World Foundation, *op. cit.*(*Space Security 2014*), p.77.

이 유엔헌장을 비롯하여 국제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 목적으로 우주활동이 가능한지에 관한 문제는 국내법이 아니라 국제법의 검토 대상이다. 특히, 환경 규제와 같이 국제적 차원의 과학기술활동은 (1) 조약 등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 있는 규범과 (2) 국제행동규범 등 법적 구속력 없는 규범에 의하여 균형 있게 규제된다는 점에서, 국제법상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문제도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 1. 법적 구속력 있는 규범

우주(outer space)라는 영역이 일부 국가의 전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주활동의 원칙을 다루는 조약은 다자조약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양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우주기술협력이나 특정 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자조약이 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 (1) 다자조약

#### (가) 우주 관련 유엔 5개 조약과 유엔 헌장

우주 관련 유엔 5개 조약<sup>14)</sup> 중 1967년 우주조약과 1979년 달협정이 우주에서의 군사적 활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 제4조<sup>15)</sup> 제1항은 지

14)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하여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서 국가의 활동을 규제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1967년 우주조약'으로 약칭), UN, *Treaties Series*, vol. 610, No. 8843, 비준국 103개국, 서명국 25개국; 우주인의 구조와 귀환 및 우주에 발사된 물체의 반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1968년 구조협정'으로 약칭), UN, *Treaties Series*, vol. 672, No. 9574, 비준국 94개국, 서명국 24개국;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1972년 배상협약'으로 약칭), UN, *Treaties Series*, vol. 961, No. 13810, 비준국 91개국, 서명국 22개국; 우주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협약(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1975년 등록협약'으로 약칭), UN, *Treaties Series*, vol. 2013, No. 15020, 비준국 60개국, 서명국 4개국; 달과 기타 천체에서 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협정(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1979년 달협정'으로 약칭), UN, *Treaties Series*, vol. 1363, No. 23002, 비준국 15개국, 서명국 4개국.

15) 1967년 우주조약 제4조:  
조약당사국은 핵무기를 탑재한 모든 물체 또는 다른 유형의 대량파괴무기를 지구 주변궤도에 두지 않으며, 천체에 그러한 무기를 설치하지 않으며 또는 다른 모든 방법으로 우주에 그러한 무기를 배치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구 주변 궤도에 ‘핵무기를 탑재한’ 물체와 같이 ‘대량파괴무기’<sup>16)</sup>의 배치만을 금지하는 반면, 동조 제2항은 달과 여타 천체에서 ‘군사 기지·시설·요새의 설치, 모든 형태의 무기 실험과 군사 훈련 실시’를 금지한다. 1979년 달협정 제3조 2항은 더 나아가 ‘달에서 어떠한 위협, 무력의 사용, 여타의 모든 적대적 행위 또는 적대적 행위의 위협’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달과 다른 천체에서는 군사 활동이 포괄적으로 금지되는 반면, 지구 주변 궤도<sup>17)</sup>에서는 대량파괴무기만이 금지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조약문의 문언적 해석에 기초하면<sup>18)</sup> 지구 주변 궤도에서는 대량파괴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는 군사 활동은 허용된다는 해석이 도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1967년 우주조약의 대원칙인 우주의 평화적 탐사 및 이용과 외관상 상반될 수 있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우주법을 포함하여 국제법상 ‘평화적 목적(peaceful purposes)’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유엔 헌장은 ‘평화적’ 또는 ‘평화(peace)’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제1조에서 유엔의 목적을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국제 분쟁을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설정하면서 평화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유엔 헌장 제51조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회원국의 무력 사용을 인정한다. 따라서 ‘평화적’ 또는 ‘평화’의 의미를 군사적인 활동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sup>19)</sup>

달과 여타 천체는 조약의 모든 당사국에 의하여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천체에서 군사적인 기지·시설·요새의 설치, 모든 형태의 무기실험과 군사훈련의 실시는 금지되어야 한다. 과학 연구 또는 기타 모든 평화적 목적을 위한 군인의 이용은 금지되지 않는다. 달과 여타 천체의 평화적 탐사에 필요한 모든 장비 또는 시설의 이용도 금지되지 않는다.

- 16) UN S/RES/1540 (2004). 유엔 안정보장이사회는 ‘대량파괴무기의 비확산’이라는 결의에서 ‘핵, 화학 및 생물학 무기, 그리고 이들 무기의 운송 수단의 확산은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구성한다’라고 기술함으로써 대량파괴무기를 간접적으로 정의한다. 단, 상기 결의는 운송 수단을 ‘핵, 화학 또는 생물학 무기를 운송할 수 있고, 특별히 그러한 무기의 운송을 위하여 설계된 미사일, 로켓 및 기타 무인 시스템’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대량파괴무기는 핵, 화학 및 생물학 무기뿐만 아니라 이 무기의 운송 수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 17) 지구 주변 궤도(Orbits around Earth)는 지구저궤도(Low Earth Orbit), 지구정지궤도(Geostationary Earth Orbit), 그리고 지구정지전이궤도(Geostationary Transfer Orbit)로 분류된다. 지구저궤도는 지구 표면으로부터 고도 2000km에 이르는 구면 지역을, 지구정지궤도는 지구 적도로부터 고도 35,786km 부근 궤도를 말한다. 지구정지전이궤도는 우주물체가 저궤도에서 지구정지궤도로 이동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구 궤도로 지구정지궤도의 ±200km에 해당된다.
- 18)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UN, *Treaties Series*, vol. 1155, No. 18232, 비준국 114개국, 서명국 45개국. 제31조  
Patrick Dailler, Mathias Forteau et Alain Pellet, *Droit International Public*, 8e édition, Paris, L.G.D.J., pp.282-286.

그렇다면 상기 논리가 국제우주법에도 적용이 가능할까? 1967년 우주조약의 ‘평화적 목적’에 대한 해석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된다. ‘평화적’을 완전한 비군사화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엔 헌장 제51조에 따라 자위권 행사에 따른 군사적 이용은 허용하되 침략적 이용<sup>20)</sup>은 금지된다는 의견이 있다.<sup>21)</sup> 마지막으로 ‘평화적’은 비무기화(non-weaponed)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주의 군사적 이용은 평화의 촉진에 상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필요에 따라 군사적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한다.<sup>22)</sup> 우주조약 제3조가 국가의 우주 탐사와 이용을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의 규제 대상으로 규정한 이상,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반드시 비군사적 이용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 (나)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

양자조약과 다자조약의 여부에 상관없이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규제하는 첫 번째 조약은 1963년에 체결된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sup>23)</sup>이다.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목적은 대기권과 우주를 비롯하여 영해와 공해를 포함하는 수중에서 핵무기 실험 및 기타 핵폭발을 금지하는 것이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원자폭탄의 투하로 국제사회는 방사성낙진의 위험과 핵무기의 위험에 전전공공하였으나, 1958년까지 미국, 구소련, 영국 그리고 프랑스에 의한 대기권에서의 핵실험은 무려 564차례에 달하였다<sup>24)</sup>. 게다가 1957년 10월 구소련에 의한 인공위성 Sputnik 1호의 발사로 우주에서의 핵실험 가능성까지 점쳐졌다. 이와 같은 사정에서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공간적 적용 범위가

19) UN Doc. A/47/277-S/24111,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pursuant to the statement adopted by the Summit Meeting of the Security Council on 31 January 1992. 1992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보고서는 “국제 평화와 안전은 반드시 전쟁과 무력 충돌의 부재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비군사적 성격의 위협은 경제적, 사회적, 인도적, 또는 생태학적 분야에서 존재하는 불안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기술함으로써 ‘평화’의 범주를 광범위하게 해석한다.

20) UN GA Resolution 3314(XXIX), Definition of Aggression

21) Hobe·Schmidt-Tedd·Schrogl(ed.), *Cologne Commentary on Space Law, Volume 1 Outer Space Treaty*, 2009, Carl Heymanns Verlag, p.22

22) D Wolter, *Common Security in Outer Space and International Law*, UNIDIR, 2005, pp.17-19.

23) 대기, 우주 및 수중에서 핵무기 실험 금지조약(Treaty Banning Nuclear Weapon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으로 약칭), UN *Treaties Series*, vol. 43, No. 480, 비준국 124개국.

24) <http://www.atomic.or.kr/atomica/figure.html?chapter=9-1-1-4&fig=T&num=1-1> (2015.4.2)



결정되었다. 그러나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세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첫째, 핵무기 실험 여부에 대한 검증제도, 의무 위반 시 강제조치, 분쟁 해결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둘째, 핵 보유 국가인 프랑스와 중국이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조약 체결 후 미국, 영국 그리고 구소련은 대기권 내 핵실험을 중단하였으나, 중국과 프랑스 양국은 조약 체결 후 1969년까지 19차례에 걸쳐 대기권 내 핵실험을 단행하였다.<sup>25)</sup> 셋째, 지하는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흠결을 이용하여, 상기 5개 핵보유국은 1963년부터 1969년까지 총 128차례에 걸쳐 지하에서 핵실험을 수행하였다<sup>2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이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있어서 대원칙을 수립하였다는 점은 간과될 수 없다.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체결 후 불과 2개월 만에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sup>27)</sup>는 우주에서의 무기경쟁 확산 예방 조치로써 지구 주변궤도에 핵무기 및 기타 대량파괴무기를 탑재한 물체의 배치를 금지하였다. 특히, 구소련과 미국은 이 결의에서 자국이 그러한 무기를 우주에 배치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함으로써 우주가 냉전의 새로운 무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 결의의 해당 문장은<sup>28)</sup> 동사만 변형된 채 1967년 우주조약 제4조 1항에 삽입되었다.

#### (다)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sup>29)</sup>

우주에서의 무기경쟁 방지(Prevention of an Arms Race in Outer Space)는 1981년 유엔 총회 결의<sup>30)</sup>에 따라 유엔 군축회의(UN Conference on

25) Ibid.

26) Ibid.

27) UN GA Resolution 1884(XVIII), Question of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28) 'placing in orbit around the earth any objects carrying nuclear weapons or any other kinds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stalling such weapons on celestial bodies, or stationing such weapons in outer space in any other manner'

29)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은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식으로 체결된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우주 관련 유엔 5개 조약과 유엔 헌장” 그리고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이 포함된 “법적 구속력 있는 규범”에서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은 조약으로 채택된 후 조약에서 정하는 일정 수의 비준서 기탁으로 발효와 함께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을 “법적 구속력 없는 규범”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 있는 규범”에서 논의한다.

30) UN GA Res 36/91 of 9 December 1981, part C.

Disarmament)의 의제로 채택되어 1982년부터 논의되어 오고 있다<sup>31)</sup>. 30여 년 간의 논의 과정에서 대표적인 규범적 노력이 2008년 2월 러시아와 중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우주에서의 무기배치와 우주물체에 대한 위협과 무력사용 금지에 관한 조약안(Draft treaty on the prevention of the placement of weapons in outer space and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outer space objects)”<sup>32)</sup>이다.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은 상기 양국이 2002년 6월 제출한 작업 문서<sup>33)</sup>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일부 수정을 거쳐 2014년 6월 유엔 군축회의에 재차 제출되었다<sup>34)</sup>.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은 유엔 군축회의의 상당수 회원국에 의하여 우주의 무기화를 규제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sup>35)</sup>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은 우주의 무기화를 규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네 가지 기본원칙을 규정한다.<sup>36)</sup>

- 첫째, 우주에 어떠한 무기도 배치하지 말 것;
- 둘째, 조약 당사국의 우주물체에 반하여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에 호소하지 말 것;
- 셋째,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조약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우주활동에 관여하지 말 것;
- 넷째, 타국, 국가그룹, 정부 간 또는 비정부 국제기구, 비정부 기관이 조약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우주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거나 조장하지 말 것.

31) UN GA Resolution 38/0. 1982년 당시 의제명은 “우주에서의 무기경쟁 방지와 위성요격시스템 금지(Prevention of an arms race in outer space and prohibition of anti-satellites systems)”이었으며, 1984년 “우주에서의 무기경쟁 방지”로 변경되었다.

32) UN CD/1839, 29 February 2008.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으로 약칭한다.

33) UN CD/1679, 28 June 2002. 작업문서의 공식 명칭은 “우주에서의 무기 배치, 우주물체에 대한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 금지에 대한 향후 국제협정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Possible elements for a future international legal agreement on the prevention of the deployment of weapons in outer space,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outer space objects)”이다.

34) UN CD/1985, 12 June 2014. 본 논문에서 설명하는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은 2014년 6월에 제출된 수정안이며 이 수정안과의 내용상 구분을 위하여 2008년 2월에 처음으로 제안된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은 ‘2008년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으로 약칭한다.

35) UN CD/1818, 14 March 2007.

36)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 제2조.

네 가지 기본원칙 중 우주에 무기 배치 금지는 우주활동을 규제하는 기존의 국제 규범과 상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우주에 무기 배치 금지라는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의 원칙과 지구 주변 궤도에 재래식 무기의 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되는 1967년 우주조약 제4조 1항이 상호 충돌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충돌을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이 1967년 우주조약과 상치되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이 체결되고 발효된 후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의 비준국 수가 1967년 우주조약의 비준국 수에 상응하거나 초과할 경우,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이 1967년 우주조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보충적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주무기의 범주에 있다. 우주의 무기화의 유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주에 배치된 물체뿐만 아니라 지상 시설에 기반을 둔 물체도 우주무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주무기를 우주에 배치된 무기뿐만 아니라 한정할 경우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은 커다란 법적 흠결을 띠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주무기를 비롯하여 관련 용어에 대한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의 정의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37)</sup>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은 제1조에서 “우주에서의 무기(weapon in outer space)”와 “우주물체(outer space object)”를 아래와 같이 각각 정의한다:

‘모든 물리적 원칙을 이용하여 우주에서 그리고 지구 표면 또는 지구 대기권에서 물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파괴하고 피해를 야기하거나 방해하기 위하여, 또는 인간을 죽이거나 인간의 생존에 중요한 생물권의 구성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또는 인간과 생물권의 구성요소에 피해를 야기하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개조된 모든 우주물체 또는 그러한 우주물체의 구성품’

‘우주에 배치되고 우주에서 운용을 목적으로 고안된 모든 장치’<sup>38)</sup>

37) 중국과 러시아는 2008년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에서 “우주(outer space)”를 ‘해발 100km를 초과하는 지구 위 공간’으로 정의하였으나, 이 정의는 2014년 수정안에서 삭제되었다. 러시아는 구소련 당시인 1983년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UN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UN COPUOS)에 상기와 같이 영공과 우주의 경계획정을 주장한 후 현재까지 이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회원국 중 경계획정에 찬성하는 국가가 극소수인데다 찬성하더라도 기준을 100km로 제안하는 국가가 없다. 이러한 사유로 러시아는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에서 결국 우주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을 포기한 듯하다.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이 우주무기의 영문을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space weapon’ 대신 ‘weapon in outer space’를 사용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전자는 어떤 장치가 우주시스템<sup>39)</sup>을 이용하여 무기로 사용되는 경우 장치의 소재지 즉 지상 또는 우주를 불문하고 그 장치는 우주무기로 간주되지만, 후자는 오직 우주에 위치하는 장치만을 우주무기로 인정하게 된다. 예를 들면, 우주에 배치하지 않는 한 우주 기반 인공위성 요격 또는 미사일 방어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 후 지상에 저장하는 것은 허용된다. 아울러 인공위성 요격미사일, 레이저, 전파교란기 등과 같은 인공위성 요격무기의 지상 배치는 그 배치가 무력의 위협을 구성하지 않는 한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의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은 “무력의 사용(use or threat of force)”을 ‘타국의 관할권 및 통제 하에 있는 우주물체에 피해를 야기할 목적의 모든 행위’로, 그리고 “무력의 위협(threat of force)”을 ‘문서와 구두로 또는 다른 모든 방식으로 무력을 사용하려는 의도의 명확한 표명’으로 정의한다.<sup>40)</sup> 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표명 없이 인공위성 요격무기의 지상배치 그 자체가 무력의 위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현실적으로 관련 국가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가장 최근의 예로 2015년 2월 25일 동경에서 개최된 미일 우주안보대화(U.S.-Japan Space Security Dialogue)에 참석한 미국 국무부의 군축 담당 차관보인 Frank A. Rose는<sup>41)</sup>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인공위성 요격미사일 개발을 ‘긴급한 위협(pressing threat)’으로 간주하였다<sup>42)</sup>.

38) 2008년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은 “우주물체(outer space object)”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우주물체(outer space object)는 지구를 제외한 모든 천체 주변궤도 또는 모든 천체 위에 발사되거나 위치하는, 또는 천체를 향하여 천체 주변궤도를 떠나는, 또는 천체로부터 다른 천체로 이동하는, 또는 다른 여타 수단으로 우주에 배치되어 우주에서 기능하기 위하여 제작된 모든 장치를 의미한다.’

39) 우주시스템(space systems)이란 우주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장치와 체계를 말하며, 우주비행체, 지상국, 우주비행체 간 데이터 링크, 발사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40)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 제1조 (c). 2008년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은 “무력의 사용(use of force)”과 “무력의 위협(threat of force)”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무력의 사용(use of threat) 또는 무력의 위협(threat of force)은 특히, 우주물체를 파괴하고 피해를 야기하며,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히 우주물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고, 또는 우주물체의 궤도요소를 의도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우주물체에 대한 모든 적대적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의 위협을 의미한다.’

41) <http://www.state.gov/r/pa/prs/ps/2015/02/237710.htm> (2015. 2. 26) “Assistant Secretary Frank A. Rose to Travel to Japan, Malaysia, Indonesia, Singapore, and India.

42) [http://www.nikkei.com/article/DGXLASGM24H4J\\_U5A220C1FF2000/](http://www.nikkei.com/article/DGXLASGM24H4J_U5A220C1FF2000/) (2015. 2. 26), “米高官、中國の衛星攻撃兵器は「脅威」日本と緊密連携”;

이와 같은 법적 흠결은 유엔 군축회의의 대다수 회원국이 우려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특히 미국의 강한 반대로<sup>43)</sup>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을 논의하기 위한 작업반도 구성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의 기본원칙 및 우주무기를 둘러싼 법적 흠결은 미국이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을 거부하는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하다. 실은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이 미국의 군축 정책과 상치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2008년 2월 유엔 군축회의에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이 제출되자 같은 해 8월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내면서 미국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미국의 군축 정책은 첫째, 미국은 우주를 군사적 또는 첩보 목적으로 이용하고, 둘째, 미국은 우주에서 군사·첩보·민간·상업 목적으로 연구개발, 실험 및 실제 운용을 수행하는 것이다.

## (2) 양자조약

우주에서의 군사 활동을 제한하는 양자조약으로 1972년 미국과 구소련 간에 체결된 탄도요격미사일 시스템 제한 조약<sup>44)</sup>이 유일하다. 1960년 대 말 적국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감지하여 격추하는 탄도요격미사일의 개발로 핵전쟁의 발발 위험이 증대되자, 미국과 구소련은 탄도요격미사일의 개발 자체를 제한함으로써 공격용 무기의 증장에 제동을 걸고자 하였다. 탄도요격미사일 시스템 제한 조약은 그 목적과 대상을 제5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각 당사국은 해양, 하늘, 우주, 또는 육상이동에 기반을 둔 탄도 요격미사일 시스템 또는 구성품을 개발하고 실험하거나 배치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http://dailywitness.com/u-s-official-warns-of-antisatellite-weapons-threat-from-china/\(2015. 2. 26\),](http://dailywitness.com/u-s-official-warns-of-antisatellite-weapons-threat-from-china/(2015. 2. 26),)  
“U.S. official warns of antisatellite weapons threat from China”

43) UN CD/1847, 26 August 2008.

44)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 간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 제한 조약(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Limitation of Anti-Ballistic Missile Systems, ‘탄도요격미사일 시스템 제한 조약’으로 약칭), UN *Treaties Series*, vol. 944, No. 13446.

탄도요격미사일 시스템 제한 조약 제2조에서 ‘비행 궤도에서 전략탄도미사일 또는 전략탄도미사일의 구성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규정된 탄도요격미사일 시스템(anti-ballistic missile(ABM) system)은 세 가지 요소 즉 탄도요격미사일, 탄도요격미사일 발사를 위한 발사체, 그리고 탄도요격미사일 레이더로 구성된다. 문제는 탄도요격미사일 시스템이 우주에 기반을 두어야(space-based) 하지만, 탄도요격미사일 시스템 제한 조약에는 우주에 기반을 둔 탄도요격미사일 시스템의 개념 및 범주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우주에 기반을 둔’이라는 표현은 국제법에 따라 통상적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우주에 기반을 둔’이라는 말은 규범적 의미보다는 기술적 의미에 더 가깝다. 즉 이 말은 탄도요격미사일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가 우주기술이며, 각각의 우주기술이 조합하여 우주시스템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우주에 기반을 둔 탄도요격미사일 시스템은 일종의 우주무기 시스템과 일맥상통하며 앞서 기술한 우주지향성 무기와 우주 간 우주무기가 탄도요격미사일 시스템 제한 조약의 적용 대상<sup>45)</sup>이 된다. 탄도요격미사일 시스템 제한 조약은 상호 억제(mutual deterrence) 정책의 일환으로 냉전의 긴장 완화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탄도요격미사일 시스템 제한 조약은 9·11 테러를 계기로 테러리스트 및 불량국가의 대량파괴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방위에 걸림돌이 되었다. 결국 미국은 2001년 12월 조약에서 탈퇴하였다.<sup>46)</sup> 탄도요격미사일 시스템 제한 조약은 조약의 효력기간을 무제한으로 규정한 제15조에 따라 미국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은 계속된다. 그러나 현재 탄도요격미사일 시스템 제한 조약의 당사국은 러시아와 구소련의 붕괴 후 이 조약을 승계한 3개국(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조약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약으로 간주할 수 있다.

45) 탄도요격미사일 시스템 제한 조약에 따라 개발, 시험 및 배치가 금지되는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략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또는 구소련의 영토 전역을 보호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 전략탄도미사일로부터 국내 방어를 위한 기지의 건설;
- 전략미사일 요격 미사일;
- 탄도요격미사일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기존의 미사일, 발사체 및 레이더의 개선;
- 전략탄도미사일 공격의 조기 경보를 위한 레이더의 배치;
- 모든 유형의 미사일 방어를 위한 연구, 실험실 및 지상 기반 시험;
- 미국과 구소련 이외의 지역에서 탄도요격미사일 시스템의 개발 및 이전;
-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항하기 위한 전역미사일(비(非)전략탄도미사일) 방위.

46) <http://2001-2009.state.gov/t/ac/rls/fs/2001/6848.htm>(2015.5.28)

## 2. 법적 구속력 없는 규범

우주활동을 규제하는 법적 구속력 없는 규범이란 일반적으로 유엔 총회에서 결의로 채택되는 원칙 및 선언을 일컫는다. 우주 관련 유엔 5개 원칙 및 선언<sup>47)</sup>이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이들 원칙 및 선언에는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언급은 없다. 5년여 전부터 논의되어 온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안과 우주활동의 투명성신뢰구축조치 유엔 정부전문가그룹의 보고서가 약 20년 동안 잠복기였던 국제우주법의 점진적인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두 개의 국제문서는 우주활동에 ‘안보’ 개념을 접목하고 군사적 활동을 다루기 때문이다.

### (1)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안

우주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최근의 대표적인 국제적 노력이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주도로 제정되고 있는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안(Draft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Outer Space Activities: ICoC)<sup>48)</sup>이다. 유럽연합은 2008년 12월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 초안을 제안한 후 유엔의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2013년 5월 키예프, 2013년 11월 방콕, 그리고 2014년 5월 룩셈부르크에서 세 차례에 걸쳐 조정회의<sup>49)</sup>를 개최하였으며, 2015년 말 또는 2016년 초 외교회의를 개최하여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안을 최종 채택하고 서명에 개방할 계획이다.

47) 우주의 이용과 탐사에 관한 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법 원칙 선언(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UN GA Resolution 1962 (XVIII); 국제 직접 위성방송을 위한 국가의 인공위성 이용을 규제하는 원칙(Principles Governing the Use by States of Artificial Earth Satellites for International Direct Television Broadcasting), UN GA Resolution 37/92; 우주에서 지구 원격탐사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ating to Remote Sensing of the Earth from Outer Space), UN GA Resolution 41/65; 외기권에서의 핵 동력원 사용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evant to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 UN GA Resolution 47/68;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특별히 고려하여,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국제협력 선언(Declaration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the Benefit and in the Interest of All States, Taking into Particular Account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UN GA Resolution 51/122.

48) [http://www.eeas.europa.eu/non-proliferation-and-disarmament/pdf/space\\_code\\_conduct\\_draft\\_vers\\_31-mar-2014\\_en.pdf](http://www.eeas.europa.eu/non-proliferation-and-disarmament/pdf/space_code_conduct_draft_vers_31-mar-2014_en.pdf) (2015. 2. 26)

49) 조정회의의 공식명칭은 ‘Open-Ended Consultation on the Proposal for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Outer Space Activities’이다.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안은 두 가지 면에서 기존 국제우주법의 법적 흠결을 보충한다. 첫째,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안은 일반원칙에서 ‘과학·상업·민간·군사 활동에서 (...)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을 촉진’<sup>50)</sup>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허용하는 첫 국제규범 문서가 된다. 그런데 이 규정을 둘러싸고 의견이 두 가지로 대별된다. 우주가 군사적으로 이미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서명국회의를 비롯한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안의 협력체계를 통해 군사 활동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과, 오히려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안이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부추겨 우주의 분쟁 지역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군사위성을 보유한 국가들이 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안이 군사 활동(military activities)의 정의 및 범주에 관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지만, 군사 활동을 우주의 군사화와 우주의 무기화에 부수하는 모든 활동으로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안은 우주활동과 자위권(self-defence)의 관계를 정립하고 있다.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안은 우주물체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나 파괴를 야기하는 행위를 세 가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자위권이 그 중에 하나를 구성한다.<sup>51)</sup>

- ①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협에 처한 경우와 같이 강제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
- ② 우주쓰레기의 발생을 경감하기 위한 경우;
- ③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의 고유한 권리를 포함하여 유엔 헌장에 의한 경우.

우주물체를 파괴하는 행위가 유엔헌장 제51조에 따른 자위권의 행사인 경우 파괴행위의 적법성 문제는 무력공격의 발생 여부와 자위권 행사 후 안전보장이사회의 판단에 의거하여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우주물체를 파괴한 국가가 그 행위를 관습국제법상 자위권의 행사로 간주할 경우 적법성 판단이 매우 어렵다. 일국이 ‘긴박하고 압도적이고 다른 수단을 선택하거나 숙고할 여지가 없는(a necessity of

50)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안 제28항

51)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안 제51항



self-defence instant, overwhelming, leaving no choice of means, and no moment for deliberation)<sup>52)</sup> 상황에서 타국의 우주물체를 파괴하였다고 주장할 때 상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국의 군사체계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인공위성에 대한 타국의 신호 교란이 군사체계에 혼란을 초래한다면, 이는 긴박하고 압도적인 상황으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자위권 행사의 법적 근거를 유엔헌장 제51조와 관습국제법 둘 중에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자위권의 적법성이 상이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안의 제정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2008년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 초안에서는 우주물체의 피해 및 파괴를 허용하는 예외 요건이 ‘유엔헌장에 따른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의 고유한 권리(inherent right of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ce in accordance with the United Nations Charter)’로 규정되었으나, 2014년 3월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안에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의 고유한 권리를 포함하여, 유엔헌장에 의하여(by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the inherent right of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ce)’로 수정되었다. 즉, 후자는 관습국제법상 자위권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유럽연합은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안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후자로 수정하였으나, 그 대신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하여 상당수 국가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 (2) 우주활동 투명성신뢰구축조치 유엔 정부전문가그룹 보고서

유엔은 2010년 지리적 균형에 기초하여 15개국<sup>53)</sup>으로 구성되는 우주활동 투명성신뢰구축조치 유엔 정부전문가그룹(UN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Transparency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Outer Space Activities: UN GGE)<sup>54)</sup>을 설립하였다. 2012년 7월부터 1년여에 걸친 연구 끝에 작성된 우주활동 투명성신뢰구축조치 유엔 정부전문가그룹의 보고서는 2013년 7월 유엔 총회에서 승인되었다<sup>55)</sup>.

52) David Harris, *Cases and Materials on International Law*, 7<sup>th</sup> edition, London, Thomson Reuters, p.747.

53) 미국, 한국, 이탈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루마니아, 브라질, 러시아, 카자흐스탄, 프랑스, 영국, 중국, 스리랑카, 우크라이나, 칠레, 나이지리아.

54) UN GA Resolution 65/68.

55) UN A/68/189.

보고서의 실제적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우주활동 투명성신뢰구축조치 유엔 정부전문가그룹의 소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이며, 다른 하나는 투명성신뢰구축조치(Transparency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TCBMs)의 의미에 관한 것이다. 유엔에서 우주활동에 고유한 국제법의 점진적인 발전과 성문화를 담당하는 기관은 총회의 상설위원회인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COPUOS)이다. 우주 관련 유엔 5개 조약과 5개 원칙 및 선언이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에서 체결 및 채택되었고, 유엔 우주사무소(UN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 UN OOSA)가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상설 사무국이다. 그러나 우주활동 투명성신뢰구축조치 유엔 정부전문가그룹은 총회의 6개 위원회 중 군축과 국제안보 문제를 다루는 제1위원회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유엔 군축사무소(UN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가 우주활동 투명성신뢰구축조치 유엔 정부전문가그룹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였다. 투명성신뢰구축조치는 국가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형성하기 위하여 국가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냉전 시대에 무력 갈등의 위험을 감소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sup>56)</sup> 따라서 우주활동 투명성신뢰구축조치 유엔 정부전문가그룹의 명칭에서 보듯이 우주활동과 투명성신뢰구축조치의 접목은 유엔이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사실상 승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주활동 투명성신뢰구축조치 유엔 정부전문가그룹 보고서가 권고하는 우주활동의 주요한 투명성신뢰구축조치는 다음과 같다:

- ① 우주정책에 관한 정보 교환 및 우주활동에 관한 사전 통지;
- ② 발사대, 비행통제센터 등 발사 시설에 대한 해외 전문가 방문;
- ③ 개발도상국의 우주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추진.

보고서에는 자위권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국제법상 허용된다는 직접적인 내용도 없다. 그러나 보고서가 교류의 대상이 되는 우주정책 정보에 군사목적의 우주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와 국가 안보에 관

56) 박원화·정영진, 『우주법』, PubPle(2013), pp.76-77.

한 정보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은 우주가 군사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더 나아가, 보고서는 로켓을 포함하여 우주기술을 국제사회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서 간접적으로 해당 국가의 군사 역량을 가늠하려고 한다.

#### IV. 결 론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안, 우주활동 투명성 신퇴구축조치 유엔 정부전문가그룹의 보고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우주법은 국제법의 점진적인 발전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안과 우주활동 투명성신퇴구축조치 유엔 정부전문가그룹의 보고서를 전후로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둘러싼 법적 논쟁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과거의 논의는 ‘1967년 우주조약과 유엔헌장을 바탕으로 우주를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였다. 그러나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안이 우주물체 파괴의 정당화 사유로써 자위권을 규정하였고 우주활동 투명성신퇴구축조치 유엔 정부전문가그룹의 보고서는 군사목적의 우주활동에 관한 정보의 공유를 권고하는 바와 같이, 지금의 논의는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국제법상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아울러 걸프전, 코소보전 및 아프가니스탄전에서 구현된 우주의 군사화가 국제우주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국가나 학자도 없는 듯하다. 문제는 우주의 무기화다. 우주물체를 파괴하는 가장 적극적인 수단은 우주 지향성 우주무기 및 우주 간 우주무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주무기가 대량파괴무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자위권 행사의 일환으로 배치되거나 사용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국제규범은 없다. 물론 국제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가진 국가 간의 양자조약이나 지역 수준의 다자조약을 통해 우주무기의 배치 및 사용을 규제할 수는 있지만, 탄도요격 미사일 시스템 제한조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약 당사국은 자국의 국방 및 안보 정책에 따라 언제든지 조약을 탈퇴할 수 있다. 상기 정황에 기초하여,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규제할 국제 규범의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한다.

첫째, 내용적인 측면으로, 논의는 우주의 무기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대량 파괴무기로 분류되지 않은 무기도 막대한 파괴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주무기의 범위 및 사용 요건을 정해야 한다.

둘째, 형식적인 측면으로, 우주의 무기화는 국가 간 또는 지역 수준이 아니라 유엔 내에서 보편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주에서 무기경쟁 방지에 한정된 유엔 군축회의의 논의에서 벗어나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법적 문제가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우주의 무기화는 무기 그 자체가 아니라 우주활동의 안전·안보·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국제우주법의 점진적인 발전과 성문화를 책임지는 주체는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이기 때문이다.

셋째,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규제할 국제 규범의 형태는 우주활동 국제행동 규범안과 같은 연성법에서 조약과 같은 법적 구속력 있는 규범의 형태로 점진적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법적 구속력 없는 규범은 문제가 되는 국제규범을 국가가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을 내리거나 국내 제도를 변경 또는 수립함에 있어서 국가에게 상당한 시간적·심리적 여유를 부여하지만, 특히 자국의 군사 활동을 규제하는 국제 규범이 구속력을 발휘하는 조약이라면 국가는 당연히 조약의 서명 및 비준을 꺼려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 및 논문)

공군전투발전단, 『우주의 군사적 활용』, 공군교재창(2004)

박원화·정영진, 『우주법』, PubPle(2013).

신동춘·조홍제, “우주상 군비경쟁과 군비통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6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1, pp. 203-237.

신홍균, “우주조약 체결 40년: 우주의 군사적 이용 규율 문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3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08, pp. 207-223.

- Bhupendra Jasani, *Peaceful and non-peaceful uses of space: Problems of definition for the prevention of an arms race*, New York, Taylor & Francis, 1991.
- Damon Coletta and Frances T. Pilch, *Space and Defense Policy*, New York, Routledge, 2009
- Detlev Wolter, *Common Security in Outer Space and International Law*, Geneva, UNIDIR, 2005.
- E. Sadeh(Ed.), *Space Politics and Policy: An Evolutionary Perspective*,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3
- Francis Lyall and Paul B. Larsen, *Space Law: A Treatise*, Surrey, Ashgate Publishing Limited, 2009
- Helen Caldicott and Craig Eisendrath, *War in Heaven: The Arms Race in Outer Space*, New York, The New Press, 2007.
- Maj. Gen. Raj Mehta, *Encyclopaedia of Missile Defence & Non-Proliferation*, New Delhi, Pentagon Press, 2008
- Michael Sheehan,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Space*, New York, Routledge, 2007
- Michel Bourbonnière and Ricky J. Lee, *Legality of the Deployment of Conventional Weapons in Earth Orbit: Balancing Space Law and the Law of Armed Conflict*,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08, Vol. 18, no. 5, pp.873-901.
- Patrick Dailler, Mathias Forteau et Alain Pellet, *Droit International Public*, 8e édition, Paris, L.G.D.J, 2009.

## 초 록

최근 우주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표어는 ‘우주활동의 안전(safety)·안보(security)·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특히 우주활동의 안보란 우주에 대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우주에 기반을 둔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그리고 우주에 기반을 둔 위협은 다른 인공위성 또는 우주쓰레기와의 충돌 등과 같은 소극적 위협뿐만 아니라 전자파 장애, 우주 및 지상에서의 무기 경쟁, 더 나아가 군사적 공격 등과 같은 적극적 위협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주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된 사례가 있는가? 만일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이를 규제하는 국제법은 무엇인가?

우주의 군사적 이용은 국가의 군사체계에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우주의 군사화(space militarization)와 우주에 실용무기체계 그 자체를 도입하는 우주의 무기화(space weaponisation)로 규정된다. 우주전쟁으로 불리는 걸프전을 비롯하여 코소보전 및 아프가니스탄전에서도 인공위성이 활용되었으며, 최근 들어 우주무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우주활동의 대헌장(Magna Carta)인 1967년 우주조약이 지구 주변 궤도에 핵무기를 탑재한 대량파괴무기의 배치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궤도에 대량파괴무기를 제외한 무기의 배치를 포함하여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가능한 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왔다. 따라서 유엔헌장을 비롯한 우주 관련 유엔 5개 조약의 분석을 통해 이 논쟁에 대한 국제법의 태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안, 우주활동 투명성신뢰구축조치 유엔 정부전문가그룹의 보고서 등과 같이, 최근 국제우주법은 국제법의 점진적인 발전의 중심에 있다. 그러므로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상기 국제문서의 분석도 필요하다.

본 논문은 기존 및 현재 논의 중인 국제 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규제할 국제 규범의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하여 제언한다.

**주제어** : 우주의 군사화, 우주의 무기화,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안, 우주활동 투명성신뢰구축조치 유엔 정부전문가그룹, 우주에서의 무기배치와 우주물체에 대한 위협과 무력사용 금지에 관한 조약안, 탄도요격미사일 시스템 제한 조약

## Abstract

### A Review of Use of Outer Space for Military Purposes From an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Jung, Yung-Jin\*

The latest slogan put forth by the international space community is the safety, security, and sustainability of outer space activities. The security of outer space activities, in particular, would be defined as the secure state from space-based threats. The latter comprises passive threats (such as collision with other satellites and space debris) and aggressive threats (such as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arms race on the earth or in outer space, and military attacks). Has outer space been used for military purposes in practice? If so, does international law regulate the military space activities it?

The use of outer space for military purposes is referred to as space militarization and space weaponisation. Satellites has been used in Gulf War, Kosovo War, and Afghan War, recently,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on space weapons are under way.

Since only the place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n orbit around the earth is prohibited in accordance with 1967 Outer Space Treaty, it may be asked whether other weapons may be placed on orbit. It will be necessary to analyze the stance of on the above question, by studying UN space-related treaties including UN Charter. New international space norms represented by PPWT, ICoC, and UN GGE Report are at the center of progressiv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In conclusion, the author will signpost the various points on international norms to be codified on the use of outer space for military purposes.

**Key Words** : Space militarisation, space weaponisation, ICoC, UN GGE, PPWT, ABM Treaty

---

\* Ph.D. in Law, Senior Researcher,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KARI).